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종교시설 추가 〉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080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종교시설 추가	2

[참고자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2026. 4. 23. 시행예정)」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1. 10.
3. 회 부 일 : 2025.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에 종교시설의 성직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최근 또다시 종교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어 성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할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종교시설 추가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교회·성당·사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을 추가하면서 목사·신부·승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직자는 보수 등 직무 수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에 관계 없이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 ----- ----- ----- ----- ----- ----- ----- ----- -----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생략) <u><신설></u> ④ ~ ⑥ (생략)	----- ----- ----- ----- ----- ----- ----- ----- ----- ----- -----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56조제1항제27호의 <u>종교시설</u>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10년 이내)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성범죄자가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성직자가 종교적 위계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거나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종교시설에서 활동하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¹⁾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추가하여 종교시설에 드나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종교시설도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이고, 특히 성직자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면하고 위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 종교시설의 경우 폐쇄적이고 집단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가 종교시설을 운영하거나 여기에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행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종교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민법」 제32조²⁾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1) 남인순의원·권미혁의원·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독교법률가회 주최 토론회(2016.12.22.), “늘어나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https://cemk.org/cemk_wp/wp-content/uploads/2018/03/1981882091_a9b15bc5_B4C3BEEEB3AAB4C2C1BEB1B3C0CEC0C7BCBAC6F8B7C2B9FCC1CBEEEB6BBB0D4C7D2B0CDC0CEB0A1_C0DAB7E1C1FD_C0A5BFEBv22816122229.pdf); 뉴스앤조이(2022.11.15.), “거룩한 범죄자들 ①~⑪”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826>); 천지일보 기사(2024.8.1.), “전과 숨기고 교회 운영 하는데… 실정법에 묶인 ‘목회자 성범죄 조희’”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5144>); 세계일보 기사(2020.4.18.), “스님이 왜… ‘n번방’ 성착취물 판매에 음란사이트 운영”(<https://www.segye.com/newsView/20200418502335?OutUrl=naver>) 등 참조.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안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종교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³⁾ 및 등록·신고의무나 종교시설의 전제가 되는 종교단체의 설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전국 종교시설의 정확한 전체 현황은 공식적인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고 실제로 현실에서 대형 교회부터 소규모 기도원까지 종교시설의 범위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제재대상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취업제한이 필요한 시설을 대통령령에서 법 기술적으로 구분하여 규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종교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직업의 자유⁴⁾, 종교의 자유⁵⁾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종교시설 및 근무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참고자료 1] 참조)은 학교, 유치원, 청소년지원센터, 공동주택의 관

3) 현행법에서 “종교시설”이란 용어는 건축물 용도 구분을 위한 조문인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만 규정되어 있음.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종교시설

4)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5)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리사무소나 경비업, 의료인, PC방 등 아동·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지속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업종임.

그런데 종교시설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종교의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직자 외에도 신도, 사역자 등 다양한 참여형태가 있고 행정, 시설 관리, 성인대상 프로그램 진행 등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영역에서 취업 및 사실상 노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봄.

셋째, 종교시설의 수와 운영형태가 다양하므로 집행 과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개정안처럼 모든 성직자 및 종교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사전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⁶⁾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관련 기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종교집단이나 이단 종교단체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어려워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존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종교법인에 속한 종교시설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종교시설)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수용하는 입장임.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체계상 종교시설은 별도의 등록·신고의무가 없어 행정적으로 그 범위와 유형을 특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하고 종교시설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직자는 종교적 소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고용관계와 차별화된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청회 등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타법개정, 2026. 4. 23. 시행예정)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

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20. 삭제 <2025. 4. 2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